

순천대학교 기타 하부조직 설치 규정

제정 2005. 09. 01. 개정 2007. 04. 01.
개정 2009. 02. 27. 개정 2010. 09. 01.
개정 2012. 11. 16. 개정 2017. 2. 23.
개정 2018. 2. 23. 개정 2018. 7. 4.
개정 2019. 3.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기타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부처장을 두고, 학생처에 학생부처장을 두고, 기획처에 기획부처장을 둔다.
(개정 2007. 4. 1, 2009. 2. 27, 2010. 9. 1, 2012. 11. 16, 2017. 2. 23., 2018. 7. 4.)

② (삭제 2012. 11. 16)

제3조(기능) ① 교무부처장은 교육정책, 학사업무, 교원인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9. 1.)

② (삭제 2012. 11. 16)

③ 학생부처장은 학생활동과 복지·장학 업무등과 관련하여 학생처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 9. 1, 2012. 11. 16, 2017. 2. 23., 2018. 7. 4.)

④ (삭제 2012. 11. 16)

⑤ 기획부처장은 대학발전계획, 대학혁신, 대학재정계획,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하여 기획처장을 보좌한다.(개정 2007. 4. 1, 2009. 2. 27, 2010. 9. 1, 2012. 11. 16, 2019. 3. 25.)

⑥ (삭제 2012. 11. 16)

⑦ (삭제 2012. 11. 16)

제4조(임명) ① 각 부처장 및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 27, 2010. 9. 1, 2012. 11. 16, 2017. 2. 23.)

② (삭제 2012. 11. 16)

부 칙(2005.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국제교류센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 11.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학(원)장의 조직, 기능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